

지방의제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시각과 정책:

92리우지국정상회의 이후 인류의 조속문제를 둘러싸고 지속가능발전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지배대립 되었다. 그만큼 지구의 자위고갈과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리제로 환경문제를 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로부터 10년후인 2002년 브라질에스버그에서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균형발전으로 합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지속가능발전문제를 환경만을 위한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가리하는 성장정책, 개발추진에 있어서의 정책집행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우려된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정부의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제고하는데서 비롯 되며 유엔의 권고에 의해 '92리우지국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90%이상의 지자체 에 구축되어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의 파트너쉽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 의제 21> 실천기구에 의한 의제실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발전 실행인 지방의제 21 실천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변화적응인 운영으로 실행체제에 허탈감이 되고 있는것이 우려된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는 국제적 의제 21의 실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유엔에 의해 대통령지국지국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있다. 이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수행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의제 21(WSSD 이후 지방행동기)를 제도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하고 지자체 내로 실천기구를 통합하고 있는 전국지방의제리리리 정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기타의제 21의제강화리 지속가능발전정책 확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확대는 정부 주도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대안으로 국제적으로 권장관계에 있는 정부체제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의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는 기타의제 21의제이다. 지방의제 21 실천기구의 범용으로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파트너쉽의 의행은 WSSD에서도 크게 반영되리라 본다. 앞으로는 내용을 대략적 채우는바이다.

이러한 국제 추세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대책은 다양화방안으로 우선 지역적으로 하는것은 참여정부의 주요리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한 기타의제 21의제 구축에 있어서 정책배출로 새로운 기구들 구성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9~8년간의 파트너쉽 구축의 ①

노리움을 홍익화 라는 지방의제기 심화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만이 갖는 기네버는 체계적 실험하면 지방의제기 심화기구
를 강북구 제로점으로 강북구에 활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